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추경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70 발의연월일: 2020. 10. 26.

발 의 자: 추경호·김희국·성일종

서일준 · 조경태 · 이 영

김승수 · 이양수 · 서병수

권영세 · 권성동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와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인데,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 보 유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고, 거래는 더더욱 하기 어려워진 상황임.

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고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함(안 제99조의13 신설). 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9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9조의13(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 거주자가 2 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(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)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「소득세법」 제104조제7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99조의13(주택시장 정상화를
	위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 거
	주자가 2020년 8월 1일부터 20
	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
	에 주택(이에 딸린 토지를 포
	함한다)을 양도하는 경우에는
	「소득세법」 제104조제7항을
	적용하지 아니한다.